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규정

사규번호	규정 2006-1
담당팀	원가관리팀
제정일자	2026.06.12
개정일자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의 친환경 경영 실천과 안전 및 동반성장 강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를 통한 회사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과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회사(공사, 용역, 납품, 설계, 구매 등) 및 회사의 공급망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책임과 권한)

① 회사

회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경영 현황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급망 평가를 수행하며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잠재적 지속가능경영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공급망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공급망은 기업의 경영활동 및 사업운영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회사 및 회사에서 지정한 외부 기관이 공급망 평가를 위한 실사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실사를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영역)

회사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영역은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사회적책임, 경영시스템 등 5개 부문으로 정한다. [별표 1]

제5조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원칙)

①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회사는 공급망 내 제4조의 항목에 대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주요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외부기관을 통하여 평가 수행을 대행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공급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공급망 내 ESG경영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협력회사 행동규범

회사는 협력회사의 기업활동에 요구되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공급망에 전달하고,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모든 공급망이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 및 관리한다. 또한 신규 협력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행동규범의 준수를 강조한다.

③ 협력회사 선정 및 평가시 ESG 평가 반영

회사는 신규 협력회사 선정 시 협력회사의 ESG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노동, 인권, 안전, 환경, 윤리 등 ESG경영 도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협력회사 선정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또한 협력회

사 갱신 평가 시에도 ESG 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공급망내 ESG 경영 참여를 장려한다.

제6조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회사는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공급망 내 인권, 환경 등의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며 도출된 리스크를 완화하고, 개선사항을 모니터링 하며 필요 시 공급망 대상 리스크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대상은 모든 협력회사를 포함하며, 매년 정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상황에 따라 생략하거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2]

① 평가대상 선정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거래 빈도, 거래 금액, 공종의 중요도, 거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협력 회사를 도출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잠재적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협력회사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서면평가

회사는 자체 진단 지표 및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협력회사의 ESG 경영 수준과 ESG 리스크를 평가한다. 서면평가 결과 ESG 위험수준이 높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평가를 진행한다.

③ 현장실사평가

회사는 서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협력회사 대상 현장 실사평가를 시행하여 협력회사의 실질적인 ESG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협력회사와 협업한다.

④ 개선사항 모니터링

회사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평가를 통해 도출된 리스크의 개선을 위해 협력회사에 개선계획을 요청하며, 개선사항의 반영 여부를 당해년도 내에 재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개선 조치 요청 후에도 공급망 ESG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계약 해지 등의 거래 중지를 실시한다.

⑤ 역량강화지원

회사는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평가를 통해 도출된 리스크를 협력회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지원사항)

① 회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회사의 ESG 경영을 장려하고 공급망 내 모든 협력회사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②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ESG 경영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항을 고려한다.

1. 협력회사 ESG 경영진단평가 및 컨설팅 지원
2. 협력회사 임직원 대상 ESG 교육 지원 (환경, 윤리, 인권, 사회적 책임 등)
3. 이해관계자의 ESG 경영 참여를 위한 원가,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타 프로그램 지원

제8조 (사이버신문고 운영)

회사는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가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등 ESG 관련 본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보할 수 있도록 고충 처리제도(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한다. 이해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부당행위를 비롯한 ESG 관련 사안을 제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 내용은 비밀로 보장하고 신고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9조 (부칙)

① 이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표 1]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영역

영역	내용
인권/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노동 금지 (자발적 근로) · 아동노동 금지 (근로취약계층 보호) · 근로시간 준수 · 임금 및 복리후생 · 사생활 보호 및 인도적 처우 (가혹행위 금지) · 차별금지 (다양성 인정)
안전/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절차 및 교육) ·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산업위생 및 보건관리 · 안전보건경영 도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법규 준수 (인허가 관리) ·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 환경오염 방지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윤리/ 사회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및 투명경영 · 뇌물수수 금지 및 부패 방지 · 개인정보보호 · 협력회사 상생 · 지역사회 공헌
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점검 · 행동규범 준수 · 교육 및 소통 · 거래업체 관리

[별표 2]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체계

